

## 2021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 2021년도 보건의료 R&D 추진방향 >

- ◇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를 '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 기초연구·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확대

### 2021년도 전략목표

공익적 R&D 투자 강화로 국민의 보건의료문제 해결,  
첨단유망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 주력산업으로의 도약

#### 4대 전략별 중점 추진방향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① 감염병 상시화에 대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등 투자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

- ② 재생의료 제도 완비 및 중점 지원  
③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D.N.A 기술 연계·활용 투자  
④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

공익적 R&D  
투자 강화

- 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R&D 확대  
⑥ 치매·만성질환 등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 중점 투자

의료현장 연계  
R&D 지원

- ⑦ 병원 인프라를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

## I .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업명            | 공고단위(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 과제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
|------------------|-------------------|--------------------------------|-----------------------|---------------------|---|---------------|
|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 | · 200백만원 이내/년<br>(1차년도 100백만원) | · 3년 이내<br>(1차년도 6개월) | 학·병·<br>국공립<br>연구기관 | 총괄 <sup>1)</sup> 또는<br>단독 <sup>2)</sup> | 2             |

1) 총괄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2) 단독과제 1개의 세부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 II. 신청 요건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 III.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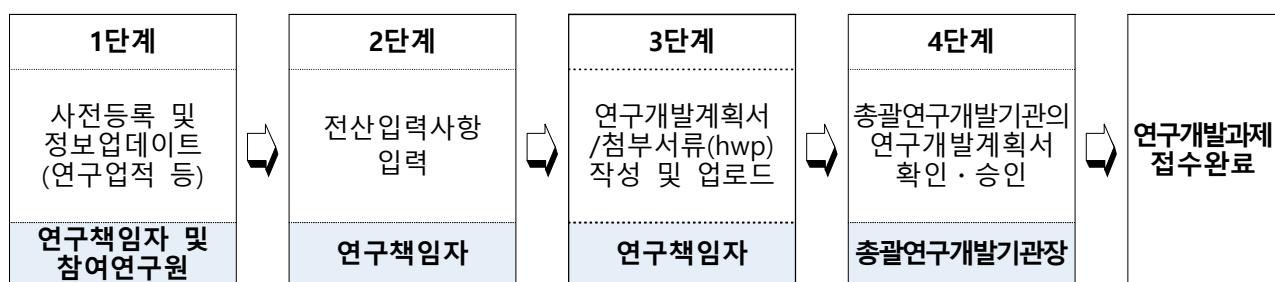
####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http://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 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개발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총괄연구개발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총괄연구개발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 □ 서류제출기한

| 공고단위 (RFP)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br>(전산입력) 마감일시                      | 총괄연구기관 전자인증<br>(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
|--------------------|--|-------------------------------|
| 의료데이터<br>보호활용 기술개발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br>2021. 6. 28(월)<br>18 : 00 | 2021. 6. 29(화)<br>18 : 00     |

- ※ 공고단위(RFP)별 신청 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http://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IV.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 관련규정은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 자료실→ 관련법규에서 확인

## V. 기타

- 참여기업 부담금 (세부과제별 산정)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 참여기업(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항목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부담액의 15% 이상   | 부담액의 13% 이상       | 부담액의 10%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율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br>나. 연구시설·장비비<br>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                   |

###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2명 인건비 감면)

## □ 연구시설 · 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 · 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를 작성 · 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 · 장비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과제는 RFP에 표기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 VI. 문의처

###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http://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http://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 공고단위(RFP)       | 사업내용(RFP) 안내      |                 | 평가일정/절차 안내   |                 |
|-----------------|-------------------|-----------------|--------------|-----------------|
|                 | 담당부서<br>담당자       | 연락처             | 담당부서<br>담당자  | 연락처             |
|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 | 의료정보R&D팀<br>김보라 | 043-713-8223 | R&D평가혁신팀<br>이 진 |